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다자녀 가정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 지원 >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163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다자녀 가정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 지원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28.
3. 회 부 일 : 2025. 4.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자동차는 가정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는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차량 선택 시 자녀의 탑승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그런데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일반 5인승 차량으로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차량탑승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유아보호용 장구 부착 의무를 준수해야 하다 보니 가족 전체가 일반 5인승 차량에 모두 탑승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면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지원 근거가 법률에 부재한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에 대해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다자녀 가정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 지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면서, 그 자녀 중에 13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6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2(가족친화를 위한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명 이상을 양육하면서 그 자녀 중에 13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자가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6명 이상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

현행	개정안
	·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도로교통법」¹⁾은 자동차의 운전자 및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면서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여야 하므로 가족 전체가 일반 5인승 차량에 모두 탑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다자녀(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13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포함)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6인승 이상 차량 구입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생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이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출생아

1)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수는 2016년 약 40만 6,000명에서 2023년 23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2).

다만, 이 법³⁾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⁴⁾을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단위: 천명, 가임여자 1명당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생아 수	406	358	327	303	272	261	249	230
합계출산율	1.17	1.05	0.98	0.92	0.84	0.81	0.78	0.721

자료: 「인구동향조사」,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 마.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6인승 차량 구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구입 관련 지원 제도를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⁵⁾는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②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 3. (생략)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6)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까지 면제하고 있음.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⁷⁾을 근거로 한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⁸⁾에서는 다자녀(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를 양육하는 사람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국비를 최대 300만원(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이 가족친화인증제를 통해 기업과 기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별 가정에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동 법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또한, 기획재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는 차량구입시 취득세 감면,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차 구입시

6)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마. (생략)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 환경부, <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p.7.

보조금 우대 등을 지원 중이므로, 추가 지원 필요성이 낮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49

【참고자료】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2023년 인구총조사)

(출처 :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별(시군구)	2023					
	계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전국	4,590,741	1,986,795	2,168,505	398,258	32,582	4,601
서울특별시	731,380	343,849	334,156	49,120	3,775	480
부산광역시	268,454	119,783	126,826	20,227	1,410	208
대구광역시	212,786	90,076	104,301	17,146	1,139	124
인천광역시	277,410	122,807	129,047	23,428	1,866	262
광주광역시	140,434	54,286	70,217	14,596	1,163	172
대전광역시	133,975	56,100	64,315	12,338	1,083	139
울산광역시	109,873	47,220	53,591	8,481	519	62
세종특별자치시	53,030	21,409	26,248	4,968	366	39
경기도	1,343,632	581,930	637,353	114,147	9,036	1,166
강원특별자치도	125,051	55,260	56,952	11,645	1,035	159
충청북도	139,089	57,640	65,416	14,525	1,281	227
충청남도	192,201	79,070	91,270	19,786	1,782	293
전라북도	145,136	57,425	69,057	16,632	1,724	298
전라남도	143,205	57,390	66,719	17,005	1,778	313
경상북도	207,372	89,821	97,102	18,670	1,552	227
경상남도	300,844	126,451	145,529	26,529	2,040	295
제주특별자치도	66,869	26,278	30,406	9,015	1,033	137